

“시설안전 유지관리 정책지원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한국시설안전공단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 협조요청

1. 귀 기관(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공단에서는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3) 심의를 위하여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39호)에 따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기존 평가위원의 임기가 2011. 1.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임기 2년(2011. 2. 1 ~ 2013. 1. 31)의 차기 평가위원회위원 후보자 등록을 받고 있사오니, 귀 기관(단체)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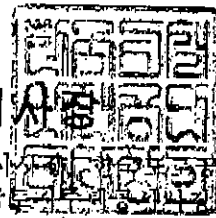
가. 등록기한 : 2010. 12. 24(금) 18:00

나. 등록방법 : 전자우편 iret@kistec.or.kr 이력서 개별 등록

다. 기타사항 : 공단홈페이지(<http://www.kistec.or.kr>) → 우측하단 popup zone
또는 공단홈페이지 → 공지사항 참조

라. 문의사항 : 한국시설안전공단 진단평가팀 (031-910-4092)

붙임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안내 1부. 끝.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수신자

소방방재청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한국농어촌공사이사장, 한국도로공사이사장, 한국수자원공사이사장, 한국전도공사이사장, 한국전도시선통단이사장, 한국토목건축협회, SH공사이사장, 경기도시공사이사장, 대한토목학회, 대한수자원학회, 한국대담회, 한국상하수도학회, 한국콘크리트학회, 한국지반공학회장, 한국터널공학회장, 한국도로교통협회, 한국함안협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설관리공학회장, 한국건설시공학회, 한국하천협회,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기술사협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대한전기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대한기계학회

차장 이종우 부장 차윤철 전담책임자 류근준 기술본부장 12/03 한재희

협조자

감사번호

시행 기술본부-15261 (2010.12.03.) 접수 ()
우 411-758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11 / http://www.kistec.or.kr
전화 /전송 / @kistec.or.kr / 공개

붙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안내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제4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위원 공개 선정시 후보자 명부 작성에 활용코자 하오니
- “첨부1”의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께서는 “첨부3”의 서식에 의한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셔서 2010년 12월 24일까지 아래 E-mail로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mail : iret@kistec.or.kr
- 자격요건, 등록자료 양식, 등록자료 작성 및 제출 등은 첨부 1, 2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 기타 사항은 한국시설안전공단 기술본부 진단평가팀(031-910-40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여 주신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서는 개인정보 및 정보공개 관계 법률을 적용하여 우리 공단 평가위원 선정 이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 기존 4기 평가위원도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진단기관 및 유지관리업체 종사자는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의 추천을 통해 후보자 등록을 받으므로 개별등록은 접수받지 않습니다.
-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 첨부 1.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 자격요건
 2. 등록자료 작성 및 제출
 3.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서. 끝.

첨부1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 자격요건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함.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행정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 건설관련분야 기술사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이하 공무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공공기관의 2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 기술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3. 당해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4. 당해분야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원
5. 당해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 기술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6. 그 밖에 위원장이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상기 항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평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IT 환경에 익숙한 자

- 제척자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시특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건설관련 법률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 임기 : 2년 (2011. 2. 1 ~ 2013. 1. 31)

첨부2

등록자료 작성 및 제출

자료 작성

○ 전문분야 및 세부분야 : 본인의 전공학과, 세부전공과목, 현직의 담당업무를 종합하여 아래 표에 따라 1, 2순위로 작성해주십시오

전문분야	세부분야
1. 교량분야	• 강교, • 콘크리트교
2. 터널 및 옹벽·사면	• 터널, • 옹벽 및 사면
3. 수리분야	• 하천·댐, • 상·하수도, • 전기·기계
4. 항만분야	• 항만
5. 건축분야	• 건축구조, • 계획·시공·재료

(예시)

전문분야	① 교량	② 교량	전문분야	① 수리	② 항만
세부분야	① 강교	② 콘크리트교	세부분야	① 하천·댐	② 항만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장명, 직장·주택주소, 전화, FAX, e-mail, 자료수령지, 직업군 : 해당 내용을 빠짐 없이 작성·표시해 주십시오

○ 학력 : 최근 날짜순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대학 이상의 학력만 기재하시고 학위구분은 학사, 석사, 박사, 기타로 구분하고 졸업은 이수, 졸업, 수료,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졸자로서 심의위원 자격이 있을 경우에는 출신고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학위취득년월	출신학교	학위구분	졸업구분	전공분야
학력	2005. 8	한국대학교	박사	수료	구조공학
	2000. 2	대한대학교	석사	졸업	구조공학
	1996. 2	대한대학교	학사	졸업	토목

○ 경력

전문분야와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근무처, 직위, 주요업무경력을 최근 날짜순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점검·진단 관련 자문·심의위원회 활동 경력을 기재하셔도 됩니다.

○ 국가 기술자격

해당자에 한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등급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1 제1호에 따른 기술등급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요건 5항에 해당하는 자만 기재)

기술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특급 기술자	·기술사	
고급 기술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 기술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 기술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첨부3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서

기 수	5기	전문 분야	①		②	
		세부 분야	①		②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직 장 명		직 위		휴대폰		
직장주소	(우)			직장전화		
				FAX		
주택주소	(우)			주택전화		
				E-mail		
자료 수령지	직장() 주택() 기타() (주소:)					
직업군	공무원() 공공기관(연구소)() 대학교() 설계·시공사() 진단·유지관리업체()					
학 력	학위취득년월	출신학교	학위구분	졸업구분	전공분야	
경 력	근무기간(시작~종료)	근부처	직위	주요업무		
국 가 기술자격	자격종목 및 등급	취득일	등록번호	자격종목 및 등급	취득일	등록번호
기술등급	①초급기술자 ②중급기술자 ③고급기술자 ④특급기술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10 작성자 (인)						
한국시설안전공단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회 위원장 귀하						